
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-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협약서 (M O U)
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(이하“양 기관”)는 신의와 성실로 금융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 적】 본 협약은 “양 기관”이 상호 협력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.

제2조 【기본원칙】 “양 기관”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 협조 한다.

제3조 【협약사항】 “양 기관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 한다.

1.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협력 추진
2. 공적채무조정제도 신청을 위한 법률서비스 연계
3.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·협력할 수 있는 분야 개발
4. 그 밖에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

제4조 【협약기간】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
제5조 【협약의 변경 및 해지】 “양 기관”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은 해지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
2.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한 경우
3. 단,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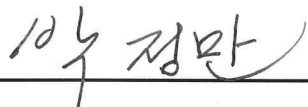
제6조 【비밀보장】 “양 기관”은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한다.

제7조 【협약의 준수】 “양 기관”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02월 12일

 서울복지재단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

센터장 박정만





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
Debitum liberum

회장 백주선

